

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학회상 시상 규정

제1조 목적

본 규정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(이하 학회라 함)의 정관 제7조에 정한 학술상 및 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시상부문

본 상은 매년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세 분야로 한다.

- 1) 학술상은 해당년도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된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.
- 2) 기술상은 자원 탐사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서 기술개발에 탁월하게 기여하였거나, 개발된 기술의 현장에서의 적용 및 활용에 있어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게 수여한다.
- 3) 젊은과학자상은 자원환경지질 분야 전공자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박사후 과정에 있고, 우수한 연구 역량으로 학문적 발전이 기대되는 만 40세 이하인 회원에게 수여한다.

제3조 수상자

- 1)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하며 수상기준은 제2조에 따른다.
- 2) 학술상의 경우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연구가 2인 이상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진 경우 주저자로 한다. 아울러 수상자는 젊은 과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50세 미만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- 3) 기술상의 경우 수상자는 3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경우 단체를 수상자로 할 수 있다.
- 4) 젊은과학자상의 경우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 학회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고 및 추천 요건

- 1) 학술상 후보자는 해당 년도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다.
- 2) 기술상 및 젊은과학자상
 - (1) 수상후보자 추천은 최소한 심사개시 한 달 전에 학회지나 학회소식지 또는 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 - (2) 수상후보자 추천은 학회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거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한다.

제5조 시상

- 1) 시상은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.

2) 수상자에게는 상패로 시상하되 경우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16조 학회상심사위원회

학회는 학회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학회상심사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둘 수 있다.

1) 위원회의 기능

- (1) 학회상 시행과 관련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집행
- (2) 수상후보자 심의 및 확정
- (3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검토
- (4)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기타 부대업무 수행

2) 위원

- (1)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학회의 부회장이,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.
- (2) 위원회의 위원은 각 전공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5명 이내로 위촉한다.
- (3)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3) 회의 및 수상후보자 선정

- (1)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과 운영을 총괄한다.
- (2) 위원회는 위원의 2/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- (3) 전항에 의거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들의 공적내용을 심사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.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최고 득표자 내지는 다득표 순으로 후보자를 정한다.
- (4) 선정된 수상후보자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.

제7조 수상결정 사실의 통보

- (1) 수상자 발표는 해당 년도 시상일 이전 본인에게 서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한다.

제18조 규정의 개폐

부칙

1997년 12월 제정
1999년 3월 개정

- 1) 1987년 1월 9일 제정
- 2) 2001년 10월 19일 개정
- 3) 2013년 4월 24일 개정
- 4)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